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--

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 조상호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4호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현재 서울시교육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직원 등의 금품 수수 등의 행위에 따

른 공익제보 시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억원 이내 및 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본 조례안은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 등의 행위에 따른 공익 제보 시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하고, 포상금 지급 시 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포상금 지급액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공익신고의 적극적인 유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본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